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8. 1. 16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8년 1월 9일

. 회부일자 : 1998년 1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4회 임시회

. 제2차 내무위원회(1998. 1. 16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김선웅)

가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」가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과 「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」에 저촉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수탁운영중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권리처분행위 방지 조문 삽입(제4조)
- 공유재산 및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일부조문을 정비(제5조)
 -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사용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전영)

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상위법령과 도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체육회
관의 운영위탁에 있어서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
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고

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된
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
로 하도록 하는등 도체육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
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·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(안)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